

16. '93年度 骨材需給計劃

資料提供：建設部

I. 심 의 사유

골재채취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골재수급계획을 심의하고자 함.

II. '92 건설경기동향 분석

지난 몇년간 과열양상을 나타내었던 건설경기는 건설경기 진정대책의 추진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따라 뚜렷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자재 수급도 균형을 회복하였음

1. '9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축허가 동향

업무 및 상업용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제한과 주택건설물량할당제등으로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는 금년 1~10월중 22.1% 감소하였으며, 연간으로는 16.3% 감소할 것으로 보임.

(전년동기비,%)

	1/4	2/4	3/4	1-10월	년 간
건축허가증가율	△15.5	△36.6	△25.4	△22.1	△16.3
주 거 용	9.6	△42.9	△36.0	△21.2	△13.6
상 업 용	△63.5	△49.0	1.5	△40.0	△32.8
공 업 용	△7.1	△12.1	△17.5	△13.8	△15.3

나. 건설투자 동향

건설투자도 금년 2/4분기 이후에는 감소세로 반전되어 3/4분기까지 1.3% 감소하는 등 둔화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0.9% 감소할 전망

(전년동기비,%)

	1/4	2/4	3/4	1/4-3/4	연 간
건설투자증가율	4.0	△2.9	△3.6	△1.3	△0.9
주 거 용	△4.1	△14.0	△7.7	△9.1	△10.0
비 주 거 용	2.0	△11.8	△13.6	△7.6	△7.1
토 목 용	27.0	20.0	7.6	15.8	16.6

2. '92 골재수급실적

건설경기진정대책의 추진으로 전자재수요가 둔화된 반면 국내 생산설비증설로 전자재 생산능력이 증대되어 전반적인 전자재 수급사정은 안정세를 나타내었음

〈'92 지역별 골재수급실적(P)〉

(단위 : 천m³)

구 분	수 요	공 급	
		허 가 공 급	비 허 가 공 급
수 도 권	73,979	30,775	43,204
강 원	8,731	4,965	3,766
충 북	8,296	5,767	2,529
충 남	14,760	14,104	656
전 북	6,692	2,175	4,517
전 남	16,088	9,551	6,537
경 북	20,134	13,643	6,491
경 남	29,372	13,243	16,129
제 주	2,448	2,230	218
합 계	180,500	96,453	84,047

※'92.12.1 현재 재고는 2,140천m³이며 비허가공급에는 현재미포함

Ⅲ. '93 건설경기 전망 및 건설경제운용방침

1. '93 건설경기 전망

가. 선행지표 전망

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와 건설수주는 '93년도에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건축허가

- 건축허가는 주택건설물량 할당제의 폐지와 건축허가제한의 해제에 따라 전년대비 11.4% 증가하여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주택건설허가는 연간 50-60만호 수준을 나타내어 전년대비 4.3% 증가
- 비주거용 건축허가는 상업용 건축허가제한의 해제에 따라 21.1% 증가

	'91	'92	'93
건축허가증가율(%)	△9.7	△16.3	11.4
주 거 용	△16.7	△13.6	4.3
비 주 거 용	1.4	△19.7	21.1

○건설수주

- 건설수주는 토목수주의 증가세 지속에 따라 전년대비 14.0% 증가 전망

	'91	'92	'93
건설수주증가율(%)	24.2	5.9	14.0
건 축	33.4	△11.5	△0.1
토 목	3.5	56.4	37.1

나. 동행지표 전망

건설경기의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내년도에도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이나, 전반적인 경기수준이 상승될 경우 소폭의 증가 예상

○건설투자

- 건설경기 선행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92 하반기 이후 1년여에 걸쳐 지속된 건축허가 급감의 영향으로,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0.4%의 감소세를 나타

별 전망이며(GNP 5% 전제),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어 GNP 성장율이 7% 수준을 나타낼 경우에는 3.2%의 소폭 증가를 나타낼 전망.

(%)

	'91	'92	'93	
			I	II
건설투자증가율	11.2	△0.9	△0.4	3.2
주 거 용	15.0	△10.3	△9.9	△9.8
비 주 거 용	0.7	△7.1	2.8	5.8
토 목 용	17.2	16.6	6.5	14.1

※ I : GNP 성장율 5% 수준

II : GNP 성장율 7% 수준

2. 건설경제 운용방침

—'91.5월 부터 건축규제를 강력히 시행한 결과 가수요를 진정시켜 자재, 인력 수급사정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민간건축행위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실수요 중심의 정상적인 진출활동은 자율화

- 민간주택건설물량 할당제는 '93.1월 폐지하며, 상업용 건축규제도 수도권 위락시설을 제외('93.6 까지)하고는 '93.1월 해제
- 주택건설을 민간 50-60만호 수준으로 유지하되 물량할당제 폐지로 민간 주택건설이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 공공주택 건설은 민간주택 건설추이를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운용
-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건축규모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조건 개선검토

〈주택건설물량 전망〉

(허가기준,천호)

	92	93		
	년간	상	하	계
• 민간주택	352	200-250	100	300-350
• 공공주택	192	70	130-180	200-250
합 계	544	270-320	230-280	500-600

Ⅳ. '93 골재수급계획

1. 전국골재수급계획

-93년도 전국골재수요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억 8천만m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단위 : 천m³)

구 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연간계
수 요	43,760	45,512	89,272	45,208	50,136	95,344	184,616
공 허 가	18,732	28,235	46,967	26,059	22,016	48,075	95,042
급 비허가	25,028	17,277	42,305	19,149	28,120	47,269	89,574

〈산정 방법〉

○ 골재의 수요

$$\frac{\text{시멘트 수요(천톤)}}{46,154} \times \frac{\text{시멘트단위당 소요골재량}}{4} = \frac{\text{골재수요(천m}^3\text{)}}{184,616}$$

○ 골재의 공급

- 골재의 공급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공급되는 허가공급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산출되는 비허가공급량으로 구분

• 허가공급량

최근 3년간의 골재수요 대비 허가채취실적평균비율 × 전국골재수요

• 비허가공급량

전국골재수요 - 허가공급량

2. 지역별 골재수급계획

-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안정으로 각 지역별 골재수요는 92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93 지역별 골재수급계획〉

(단위 : 천m³)

구	분	수	요	공	
				급	급
				허가공급	비허가공급
수	도	권	75,666	35,300	40,366
강		원	8,930	7,348	1,582
충		북	8,485	4,749	3,736
충		남	15,097	9,748	5,349
전		북	6,845	2,712	4,133
전		남	16,455	5,870	10,585
경		북	20,593	14,071	6,522
경		남	30,041	13,835	16,206
제		주	2,504	1,409	1,095
합		계	184,616	95,042	89,574

〈산정 방법〉

○ 지역별 수요

최근 3년간의 지역별 시멘트출하비율의 평균 × 전국골재수요

○ 허가공급량

해당지역별 골재수요 × 최근 3년간의 해당 지역골재수요 대비

허가채취실적의 평균비율

○ 비허가공급량 = 해당 지역의 골재수요 - 허가공급량

3. 지역별 골재의 종류별 허가공급계획

○년도별 추이

(단위 : 천m³)

구 분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합 계	69,743	99,820	96,063	95,042
하 천 골 재	40,015	50,537	45,149	44,760
바 다 골 재	10,165	13,809	16,330	17,746
산 림 골 재	18,544	34,311	33,622	28,783
육 상 골 재	1,019	1,163	962	3,753

○지역별('93)

(단위 : 천m³)

구 분	골재의 종류				
	합 계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
수 도 권	35,300	12,291	13,731	9,180	98
강 원	7,348	6,760	—	—	588
충 북	4,749	1,757	—	1,852	1,140
충 남	9,748	4,672	2,437	2,632	7
전 북	2,712	465	—	1,040	1,207
전 남	5,870	599	1,556	3,689	26
경 북	14,071	11,254	22	2,108	687
경 남	13,835	6,962	—	6,873	—
세 주	1,409	—	—	1,409	—
합 계	95,042	44,760	17,746	28,783	3,753

4.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대책

○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골재채취허가를 금지(골재채취법시행령 제27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공원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시설 및 그 유역
-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경계로부터 2km이내의 구역(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 4km이내의 구역)
-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구역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역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지역
-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수역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구역
-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42조)

○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대책을 강구토록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계획서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함.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 하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중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로서 우수거리가 10km이내에서의 토석, 자갈의 채취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준설사업 또는 골재의 채취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상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산림보전지역(용도지역변경포함)내에서 채석·채토를 위한 형질변경행위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5. 행정사항

○ 골재채취허가의 조기 완료조치

- '92.2월까지 가급적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종료하고 골재채취허가 조치

○ 골재채취현장에 대한 감독철저

- 골재채취현장에 대하여 허가신청시 제출한 복구계획서대로 복구이행.
- 골재채취현장에 감독공무원의 지정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본 안건은 심의·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에 통보.

참고 : 지역별·분기별 골재수급계획

〈수 도 권〉

(단위 : 천m³)

구 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년간계	
수 요	13,635	26,355	39,990	20,835	14,841	35,676	75,666	
공 급	허 가	6,430	10,910	17,340	9,901	8,018	17,919	35,300
	비허가	7,205	15,445	22,650	10,934	6,823	17,757	40,366

〈강 원 도〉

(단위 : 천m³)

구 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년간계	
수 요	1,599	2,686	4,285	2,706	1,939	4,645	8,930	
공 급	허 가	1,041	2,105	3,146	2,263	1,939	4,202	7,348
	비허가	588	581	1,139	443	0	443	1,582

〈충 청 북 도〉

(단위 : 천m³)

구 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년간계	
수 요	1,787	2,461	4,248	2,070	2,168	4,237	8,485	
공 급	허 가	890	1,431	2,321	1,412	1,016	2,428	4,749
	비허가	897	1,030	1,927	658	1,152	1,809	3,736

〈충 남 · 대 전〉

(단위 : 천m³)

구 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년간계	
수 요	3,180	4,378	7,558	3,682	3,857	7,539	15,097	
공 급	허 가	1,827	2,937	4,764	2,898	2,086	4,984	9,748
	비허가	1,353	1,441	2,794	784	1,771	2,555	5,349

〈전라북도〉

(단위: 천m³)

구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년간계
수요	1,555	1,934	3,489	1,556	1,800	3,356	6,845
공허가	616	766	1,382	699	631	1,330	2,712
급비허가	939	1,168	2,107	857	1,169	2,026	4,133

〈전남·광주〉

(단위: 천m³)

구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년간계
수요	3,526	5,097	8,623	4,758	3,073	7,832	16,455
공허가	1,272	1,855	3,127	1,717	1,026	2,743	5,870
급비허가	2,254	3,242	5,496	3,041	2,047	5,089	10,585

〈경북·대구〉

(단위: 천m³)

구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년간계
수요	3,080	9,348	12,428	4,833	3,333	8,165	20,593
공허가	3,080	3,997	7,007	3,661	3,333	6,994	14,071
급비허가	0	5,351	5,351	1,172	0	1,171	6,522

〈경남·부산〉

(단위: 천m³)

구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년간계
수요	6,789	8,583	15,372	7,687	6,982	14,669	30,041
공허가	3,028	3,930	6,958	3,600	3,277	6,877	13,835
급비허가	3,761	4,653	8,414	4,087	3,705	7,792	16,206

〈제 주 도〉

(단위 : 천m³)

구 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년간계
수 요	575	753	1,328	678	498	1,176	1,504
공 급	허 가	278	441	719	397	292	1,409
	비허가	297 (183)	312 (290)	609 (473)	281 (262)	206 (195)	486 (456)

※ ()은 다른 도로부터의 搬入物量임.

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